

##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규정 (산학특임교수제도 발취, 별표 포함)

제정일: 2013.11.26

개정일: 2026.02.24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, 연구, 봉사업적이 탁월한 정교수를 위한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(이하 '프로그램'이라 한다)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대상)**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교수에게 적용된다. 다만, 의료원과 미래캠퍼스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09. 30.]

[종전 제 2조는 제 3조로 이동 2022. 09. 30.]

**제3조 (프로그램 단계 및 선정 기준)** ① 정교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1, 2, 3단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.

③ 제3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명예특임교수(연구트랙, 교육트랙, 사회공헌트랙), 산학특임교수로 구분하여 선정하며, 다음 각호 기준을 충족한 정교수로 한다.

1. 3단계: 정년퇴직 예정인 정교수. 다만,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(일반부문, 대형과제 연구단장 부문)과 교육트랙은 정교수로서 5년이상 재직한 정교수
2. 명예특임교수 업적 기준: [별표2]
3. 산학특임교수 선정 기준 및 절차: [별표4]
4. 심사일이 속한 학년도에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원

⑤ 제1단계 및 제2단계 프로그램 대상인원은 대상이 되는 정교수의 20% 이내로 하며, 3단계 인원은 대상되는 정교수의 약간명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09. 30.]

**제4조 (추천위원회)** ①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심사를 위하여 정교수 인센티브 후보 추천위원회(이하 '추천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21. 5. 24., 개정 2022. 9. 30.>

1. 당연직위원 : 교학부총장(위원장), 행정·대외부총장, 국제캠퍼스 부총장, 연구부총장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, 교무처 부처장(간사)
2. 임명직위원 : 총장이 추천하는 인문사회계 교수 2명, 이공계 교수 2명

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 5. 24.>

1. 후보 선정기준 및 절차
2. 후보 심사 및 추천
3. 명예특임교수, 산학특임교수 재임용

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교육트랙을 제외한 3단계 정교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심사 대상자는 추천심사 참고자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24., 2022. 9. 30.>

1. 융합과학기술원부문을 제외한 연구트랙, 산학특임교수: 소속 대학(원) 혹은 관련 기관의 장과 합의한 연구활동계획서(연구공간, 연구장비, 연구인력 및 기타 연구여건 확보계획과 교외 연구비수주 신청 시 본부와 확약한 본부지원사항 반드시 포함)
2. 사회공헌트랙 : 활동계획서 및 기타 서류

### 제5조 (인센티브와 처우)

#### ③ 산학특임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재임 기간 중 논문, 저서 등의 게재 실적에 대해 전임교원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2. 급여는 연구비, 산학협력재원, 해당 기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며, 연구비의 25%를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한다. 다만, 무급일 경우 제공하지 아니한다.
4. 특수대학원 강의를 제외하고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수행할 수 있고, 비전임교원의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하며, 명예교수로 선정된 경우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.

### 제6조 (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 시기)

#### ③ 산학특임교수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정년퇴직이 속한 학기에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.

#### ④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는 정년퇴직 후 소속될 기관의 공간 및 대학원생 배정(공동지도교수에 한함) 등에 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연구공간, 대학원생 배정 등이 불필요한 경우 동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임용 기간 및 재임용 심사기준) ①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, 만 70세가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을 초과할 수 없다.

4. 산학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.
  - 가. 최초 3년으로 임용하며, 재임용 시 2년으로 한다.
  - 나. 최초 임용 시 임용기간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연구계약기간, 과제 참여 기간 혹은 연구참여기간에 따라, 3년 내외로 초과할 수 있으며, 최초 임용기간과 재임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으로 한다.

#### ② 명예특임교수와 산학특임교수의 재임용 심의는 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며, 재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4. 산학특임교수: 일정 금액 이상의 교외 연구과제 수주가 확약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으며,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(연구원 혹은 학과 및 대학)의 동의와 추천을 받은 경우

### 제9조(재원)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원이 소속한 각 캠퍼스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
1. 1단계, 2단계 : 교비
2. 3단계
  - 가. 교육트랙, 사회공헌트랙 : 교비
  - 나. 연구트랙, 산학특임교수 : 연구비, 산학협력재원, 혹은 해당 기관 자체 재원
  - 다. 명예특임교수 및 산학특임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경우: 교비

[본조 신설 2022. 09. 30.]

[종전 제 9조는 제 8조로 이동 2022. 09. 30.]

제10조(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.

**부 칙 <2022. 09. 30.>**

- (13) 1. (시행일) 이 전면 개정 규정은 2022. 09. 30.(총장결재일)부터 시행한다.
- 2. (재직 중인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특례) 신설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와, 제5항은 종전 기준으로 선정되어 재직 중인 명예특임교수에게도 적용한다.

**부칙 (2024.3.8.)**

- (14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제1호)는 2024.03.08.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(2024.11.20.)**

- (15)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(2025.01.04.)**

- (16)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 제4항 제1호, [별표3])은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26. 2. 24.>**

- (1) 이 개정규정(제3조 제4항 제1호, 별표2, 별표3)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※ [별표4] 산학특임교수 대상자 선정 기준**

- 1.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
- 2. 산학특임교수의 공개경쟁 채용의 심의 및 임용 절차는 교무처가 진행하며, 심의 및 추천은 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.
- 3.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중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명을 선발한다.

<b>업적대상 기간</b>	- 선정심사일이 속한 직전 10개 학기 ☞ 2021.3.1.~2026.2.28.
<b>연구업적 기준</b>	- 제1, 2단계 정교수인센티브 연구업적 기준 충족 ☞ 선정심사 당시 대상자의 각종 연구지표(FWCI, IF 등)를 종합적으로 고려함
<b>연구비 수주 기준</b>	- [별표2]의 명예특임교수 연구트랙 일반부문의 연구비 수주 기준 충족 ☞ 정년퇴직 후 1년까지 일정 금액 이상 교외 연구과제 수주 확정 혹은 소속 기관 연구기금 확보 ☞ 연구기금 혹은 연구비에 대한 기준의 충족 여부는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에서 정함
<b>소속 기관의 동의</b>	- 소속 희망 기관(연구소 혹은 학과 및 대학 등)의 동의. 다만, 연구공간 및 대학원생 배정이 불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을 교무처로 하고, 별도의 동의절차를 생략한다.

끝.